

부산지방법원 2022. 6. 9 선고 2021가단3433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4. 28.

판 결 선 고 2022. 6. 9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20. 4. 22. 접수 제171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### 가.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

별지 ‘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’의 기재와 같다(다만 각 ‘원고’는 ‘신용보증기금’으로 고쳐쓴다).

### 나. A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

A은 2021. 6. 29.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, 원고는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.

### 다. A의 무자력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

A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 합계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4. 22. 피고 명의로 같은 달 21.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4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16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 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 D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,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피고는, A이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를 퇴사하면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원금 2850원 남짓의 선급금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서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, 을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## 3. 결 론

그렇다면 피고는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 
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,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 
사건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이우철

별지